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 특례 등 규정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 뒤 '27년 2월 중 시행 예정

【관련 국정과제】 20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1. 추진 경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GPU 확보와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AIDC')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DC의 조속한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AIDC 진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AIDC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왔다.

AIDC 특별법안이 '25.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6.4.14), 법사위('26.5.6)를 거쳐 본회의('26.5.7)에서 의결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한민수 · 황정아 · 조인철, 국민의힘 김장겸, 조국혁신당 이해민

### 2. 법안 주요 내용

동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제2조)하고 실태조사를 추진(제7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제14조), ▲해외진출 촉진(제15조),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제16조),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제17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 ② 조속한 AIDC 구축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 [ 1. 인허가 일괄처리(제18조) ]

그간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AIDC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되어,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 2.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제19조) ]

또한,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향후 비수도권을 AIDC의 입지로 선정 시 AIDC의 핵심인 신속한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

### [ 3.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제21조) ]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향후 계획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기준 및 절차는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법의 통과를 위한 과방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법을 발의해주신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김장겸, 이해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 의원명은 여당 야당 순, 같은 정당 내에서는 가나다순으로 표기

아울러,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하여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장기철 (044-202-6590)
		담당자	사무관	용인호 (044-202-6593)
			주무관	박순홍 (044-202-6594)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